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8호) 안내

1.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하고,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18호(2022. 1. 24.)]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가. 개정사항: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등

나. 시행일: 공포한 날

2. 아울러 일선 요양기관에서 고시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환자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협회 및 단체에서는 산하 지부 등에 동 개정 사항이 전파되어 일선 요양기관에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대한의사협회장, (사)대한병원협회장, (사)대한약사회장, (사)한국병원약사회장,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사)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주무관 김충열 보건사무관 출장 보험약제과장 양윤석 전결 2022.1.24.

협조자

시행 보험약제과-308 (2022. 1. 24.)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재청 / http://www.mohw.go.kr
운용담당관

전화번호 044-202-2754 팩스번호 044-202-3935 / neoscape1@korea.kr / 대국민 공개